

이사회 회의록

제 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22년 10월 28일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 4 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의결일시 : 2022. 10. 28.(금)
2. 회의방식 : 서면결의
3. 출석상황 :

재 적 임 원			출 석 임 원		
계	이 사	감 사	계	이 사	감 사
13	11	2	9	8	1

※ 불참임원 : 4명

* 참석임원

- 이사장 이필영(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이 사 홍은아(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이 사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 이 사 유유희(유유희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 사 진상현(前드림학교 교장)
- 이 사 강기정(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사 전벽수(前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이 사 김장옥(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 감 사 황유경(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장)

4. 의 장 : 이사장 이필영(충청남도 행정부지사)
5. 기록자 : 사무처 팀원 이아영

2022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개최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 설명으로 심의하며,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하다.

별첨 : 이사회 의결서 1부

2022년 10월 28일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22년 제4차 (임시)이사회 안건심의 결과

① 심의결과

안건번호	안 건	결 과
1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의결
2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3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4	임금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5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6	공인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의결

②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제안 사유

- 2019, 2020년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기타이자수입 반영
- 인건비 및 도비 교부내역 변동에 따른 조정
- 타기관 지원사업 및 수익자사업 내역 변동에 따른 예산 반영
- 반납금 및 기타 세부사업 간 변동사항 반영

2. 의결 결과: 원안 의결

※ [별첨]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③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 사유

- 공무원에 대한 직급 배정기준 명확화

2. 의결 결과: 원안 의결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칙 (개정 2022.10.28.) <u>제1조(시행일)</u> <u>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u>

[별표 5] 직원 직위 및 직급

<현 행>

직	급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직	위	사무처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배정율에 따른 정원		1명	2명	2명	4명	6명	6명	9명	8명

※ 규정적용 공무원은 7급으로 포함되며 직급별 정원수와 관계없음.

※ 규정적용 공무원 : PTSD전담, 진로직업체험공간전담, 안전전담, 리더전담, 교류전담

<개 정 안>

직	급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직	위	사무처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배정율에 따른 정원		1명	2명	2명	4명	6명	6명	9명	8명

※ 규정적용 공무원은 7급으로 포함되며 직급별 정원수와 관계없음.

※ 규정적용 공무원 : 고위기관리전담, PTSD전담, 진로직업체험공간전담, 안전전담, 리더전담, 교류전담, 아이키움 대체인력

4]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 사유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규정 정비사업 이행
-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개정사항(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119, 2022.08.10.) 반영
- 아이키움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 자격기준 명확화 및 자격요건 완화로 지원자의 응시 기회 확대

2. 의결 결과: 원안 의결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팀장 직위 부여)</p> <p>① ~ ② (생 략)</p> <p>③ 팀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금규정에 의하여 연봉을 <u>재획정하여야 하며, 팀장으로 승진한 때에는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14조의2(팀장 직위 부여)</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재획정하여야 한다.</u></p>																														
<p>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p> <p>① (생 략)</p> <p>1. ~ 4. (생 략)</p> <p>② 이사장은 직원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u>훈계 또는 주의 처분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2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p> <p>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u>잘못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u></p> <p>1. <u>훈계 : 감사 결과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u></p> <p>2. <u>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u></p>																														
<p><신 설></p>	<p>부칙 (개정 2022.10.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p>																														
<p>[별표1] 직 원 채 용 자 격 요 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자 격 기 준</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무처장</td> <td>(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팀장</td> <td>(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팀원</td> <td>(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상담복지센터장</td> <td>(생 략)</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자 격 기 준	비고	사무처장	(생 략)	-	팀장	(생 략)	-	팀원	(생 략)	-	상담복지센터장	(생 략)	-	<p>[별표1] 직 원 채 용 자 격 요 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자 격 기 준</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무처장</td> <td>(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팀장</td> <td>(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팀원</td> <td>(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상담복지센터장</td> <td>(현행과 같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분	자 격 기 준	비고	사무처장	(현행과 같음)	-	팀장	(현행과 같음)	-	팀원	(현행과 같음)	-	상담복지센터장	(현행과 같음)	-
구분	자 격 기 준	비고																													
사무처장	(생 략)	-																													
팀장	(생 략)	-																													
팀원	(생 략)	-																													
상담복지센터장	(생 략)	-																													
구분	자 격 기 준	비고																													
사무처장	(현행과 같음)	-																													
팀장	(현행과 같음)	-																													
팀원	(현행과 같음)	-																													
상담복지센터장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팀장	(생 략)	-		팀장	(현행과 같음)	-
	팀원	(생 략)	-		팀원	(현행과 같음)	-
	생활 지도원	(생 략)	-		생활 지도원	(현행과 같음)	-
	활동진흥 센터장	(생 략)	-		활동진흥 센터장	(현행과 같음)	-
	팀장	(생 략)	-		팀장	(현행과 같음)	-
	팀원	(생 략)	-		팀원	(현행과 같음)	-
	성문화 센터장	(생 략)	-		성문화 센터장	(현행과 같음)	-
	전문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 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p><신 설></p>	-		전문 강사	<p>· ----- ----- ----- 전공한 사람</p> <p>· ----- ----- 취득한 사람</p> <p>·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
	공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사업 및 운영지침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며 단, 관련 지침이 없을 경우 내부규정을 준용한다. <p><후단 신설></p>	-		공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준용하되, 관련 지침이 없을 경우 내부규정의 소속부서 팀원 기준을 따른다. 단, 아이키움 대체인력 제한 없음 	-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임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p> <p><신 설></p> <p>④ (생 략)</p> <p>⑤ (생 략)</p> <p>⑥ (생 략)</p> <p>⑦ (생 략)</p> <p>⑧ 가족수당의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을 준용한다.</p>	<p>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p> <p>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p> <p>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까지</p> <p>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자</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p> <p>⑤ 임직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p>⑥ (현행 제22조 제4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22조 제5항과 같음)</p> <p>⑧ (현행 제22조 제6항과 같음)</p> <p>⑨ (현행 제22조 제7항과 같음)</p> <p>⑩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p>
<p><신 설></p>	<p>부칙 (개정 2022.10.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1] 직급별 연봉한계액 및 직급별 정원표

<현 행>

구분	진흥원		하한액	상한액
	급수	정원		
원장			충청남도의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지침에 따름	
사무처장		1명	56,300,000	75,140,000
센터장	1급	2명	48,895,880	64,741,470
팀장	2급	2명	43,249,400	60,793,230
	3급	5명	39,690,200	58,637,280
	4급	5명	35,289,020	54,279,840
팀원	5급	6명	31,582,930	52,514,070
	6급	9명	27,677,650	48,000,510
	7급	8명	24,732,000	44,638,620

※ 사무처장의 연봉은 경영성과 및 기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상·하한액 범위 내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책정

<개 정 안>

구분	진흥원		하한액	상한액
	급수	정원		
원장			충청남도의공공기관장 연봉기준 지침에 따름	
사무처장		1명	56,300,000	75,140,000
센터장	1급	2명	48,895,880	64,741,470
팀장	2급	2명	43,249,400	60,793,230
	3급	4명	39,690,200	58,637,280
	4급	6명	35,289,020	54,279,840
팀원	5급	6명	31,582,930	52,514,070
	6급	9명	27,677,650	48,000,510
	7급	8명	24,732,000	44,638,620

※ 사무처장의 연봉은 경영성과 및 기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상·하한액 범위 내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책정

⑥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 사유

- 공공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22. 9. 5. ~ 9. 16.) 지적사항 반영

2. 의결 결과: 원안 의결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5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u>
제17조(공가)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제17조(공가)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반일 단위(4시간) 인정</u>
제18조(병가)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u>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제18조(병가) ① ----- ----- 1. ~ 2. (현행과 같음) ② <u>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u>
<신 설>	부칙 (개정 2022.10.28.) 제1조(시행일) <u>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u>

7] 공인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 사유

○ 2022년 제2차 임시이사회('22. 4. 26.) 의결사항에 따른 연동규정 개정

2. 의결 결과: 원안 의결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부칙 (개정 2022.10.28.)</u></p> <p><u>제1조(시행일)</u></p> <p><u>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u></p>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

<현 행>

종류	공 인 명 칭	규격 (mm)	수량	서체
공인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인(대외문서발송용)	27×27 정방형	1	한글 전서체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인(대외문서발송용)		1	
법인인감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인(법인인감)	24×24 정방형	1	한글 전서체
회계 관계 직원공인	경리관인, 징수관인, 분임경리관인, 분임징수관인	20×20 정방형	각1	한글 전서체
	물품관리관인, 채권관리관인, 지출원인, 기금운영관인, 물품출납원인, 분임물품 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8×18 정방형	각1	한글 전서체
합의제 기구공인	<u>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u>	24×24 정방형	각1	한글 전서체

회계관직 직원의 공인명

1.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경리관인
2.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징수관인
3.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분임경리관인
4.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분임징수관인
5.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물품관리관인
6.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기금운영관인
7.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채권관리관인
8.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지출원인
9.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물품출납원인
10.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분임물품출납원인
11.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수입금출납원인
12.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3.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인사위원회인
14.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인
15.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선거관리위원회인

<개 정 안>

종류	공 인 명 칭	규격 (mm)	수량	서체
공인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인(대외문서발송용)	27×27 정방형	1	한글 전서체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인(대외문서발송용)		1	
법인인감	재단법인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인(법인인감)	24×24 정방형	1	한글 전서체
회계관계 직원공인	재무관인 , 징수관인, 분임재무관인 , 분임징수관인	20×20 정방형	각1	한글 전서체
	물품관리관인, 채권관리관인, 지출원인, 기금운영관인, 물품출납원인, 분임물품 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18×18 정방형	각1	한글 전서체
합의제 기구공인	인사위원회위원장인,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24×24 정방형	각1	한글 전서체

회계관직 직원의 공인명

1.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재 무 관 인
2.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징 수 관 인
3.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분 임 재 무 관 인
4.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분 임 징 수 관 인
5.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물 품 관 리 관 인
6.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기 금 운 영 관 인
7.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채 권 관 리 관 인
8.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지 출 원 인
9.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물 품 출 납 원 인
10.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분 임 물 품 출 납 원 인
11.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수 입 금 출 납 원 인
12.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세 입 .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인
13.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인
14.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임 원 추 천 위 원 회 위 원 장 인
15. 재 단 법 인 충 청 남 도 청 소 년 진 흥 원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인